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3. 4. 24.(수)

행정문화위원회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3년 4월 5일
- 다. 회부일자 : 2013년 4월 9일
- 라. 상정일자 : 2013년 4월 16일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강호동)

가. 제안이유

- 청주시가 시행하는 “금천동 소공원 조성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매각하고,
- 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단지에 입주할 희망하는 기관·기업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처분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각》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61-90 (대지 1,970m²)
- 매각재산 : 1필지 1,970m² 1,235백만원(공시지가)
- 매각시기 : 2013. 4 ~ 2013. 12

《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 위 치 :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650번지 일원
- 매각재산 : 12필지 41,488.1m² 6,488백만원(분양가 156,380원/m²)
 - 일반분양: 32,488.1m² 5,080백만원
 - 특별분양: 9,000.0m² 1,408백만원 (충북대 보건의료융합교육관)
- 매각시기 : 2013. 4 ~ 매각 종료시까지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금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있어

-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각’ 대상지의 경우, ‘96년도에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도유지)로서 청주시에서 일반재산으로 위임관리하고 있는 바,
-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변 도시경관을 저해함에 따라 소공원 조성(2012년도 도시계획시설-소공원 결정)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과 쉼터

공간 제공 등 시민편의시설을 설치 하고자 청주시에서 매수신청을 한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현재 청주시에서 부지내 건축물 5동 중 4동 철거완료, 1동 보상협의 중

○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첨단의료복합단지 매각은

- 지난 '12년 2월 첨단의료 복합단지 1차분양을 완료(9개 기관, 49,029㎡)하고 그간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의 수요가 있어 2차 분양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 총 분양규모는 12필지 부지 41,488.1㎡를 조성원가 (156,380원/㎡)로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관련법령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조성원가 매각) 등에 의거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차 변경계획안 등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제 474호

제출연월일 : 2013년 4월 5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청주시가 시행하는 “금천동 소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매각하고,
- 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단지에 입주할 희망하는 기관·기업에 매각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처분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각》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61-90(대지, 1,970m²)
- 매각재산 : 1필지 1,970m² 1,235백만원(공시지가)
- 매각시기 : 2013. 4. ~ 12.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 위 치 :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650번지 일원
- 매각재산 : 12필지 41,488.1m² 6,488백만원(분양가 156,380원/m²)
 - 일반분양 : 32,488.1m² 5,080백만원
 - 특별분양 : 9,000.0m² 1,408백만원(충북대 보건의료융합교육관)
- ※ 세부내역 : 따로 붙임
- 매각시기 : 2013. 4. ~ 매각종료시까지

□ 매각대상용지 세부내역

소재지	지번	(가)지번	면 적(m ²)	재산가액 (천원)
계	4필지	12필지	41,488.1	6,487,910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650	650	6,612.0	1,033,985
		650-1	3,635.7	568,551
	651	651	7,535.9	1,178,465
		651-1	1,653.0	258,496
		651-2	1,653.0	258,496
		651-3	1,653.0	258,496
		652	1,653.0	258,496
	652	652-1	1,653.0	258,496
		652-2	3,133.5	490,017
		652-3	1,653.0	258,496
		652-4	1,653.0	258,496
		660	660-2	9,000.0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 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13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14-3)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분 시기	처 분 사 유	매수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2 건	43,458.1	7,723,100				
	건물							
	기타							
1	토지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61-90 1필지	1,970	1,235,190	2013.4~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로 매각	청주시	매각
	건물							
	기타							
2	토지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650 등 4필지	41,488.1	6,487,910	2013.4~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희망기관·기업에 분양	충북대 등	매각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 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